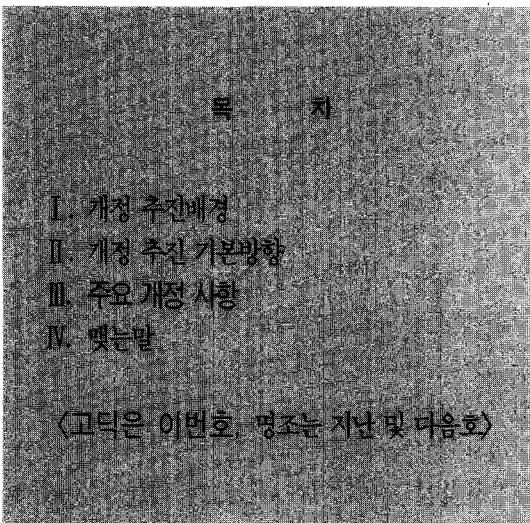


'98. 3. 1 시행된

# 상표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해설(2)



부이사관 김 중 효  
〈특허청 심사기준과장〉



〈전호에 이어 계속〉

## 5. 多類1出願制度의 導入

### 가. 制度의 概要

다류1출원제도란 현행 1류1출원제도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다류 지정출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구분의 류별에 관계없이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류의 상품구분에 해당하는 지정상품들을 함께 기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상표와 서비스표를 1출원서에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하여 출원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특히 다류출원의 경우 최초 지정류 이외에 추가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류에 대한 출원료를 차등 규정하여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하는 등 출원인의 편익이 한층 제고되도록 하였다.

### 나. 導入의 必要性

출원인의 입장에서 출원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므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민의 출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표법 조약에서 의무조항으로 규

정하고 있어 등 조약가입을 대비하는 등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 制度 導入에 따른 問題点 및 對策

다류지정출원의 지정상품중 일부 상품이 부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부 무효는 전체무효가 성립한다는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정상품의 축소 보정 또는 분할 등에 의해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를 거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구분에 따라 일부거절 또는 일부등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마다 자유롭게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품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편의성이 다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6. 商標權移轉節次의 簡素化

가. 改正內容

현행 상표권이전시 일간신문 등에 이전사실을 공고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전사실 공고제도를 폐지하므로써 이전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 관련조문: 중전법 제54조 제3항, 제4항

나. 改正理由 및 期待效果

현행 제도의 취지는 이전사실을 공중매체에 공시케함으로써 상표사용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상표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되도록 일반수요자들 및 관련업체

에 상표권자가 바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이전공고가 일반수요자의 관심권 밖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고를 위한 절차도 번잡할 뿐아니라 상당금액의 공고비용(최소 5만원 정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공고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전공고제도는 상표법조약(TLT)에서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동조약 가입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 外國事例

주요선진국들 대부분이 상표권이전시 공고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경우도 '97. 4에 동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7. 消滅된 타인의 先登錄商標와의 類似 與否判斷 適用時點 關聯規定 改正

가. 改正理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된 경우는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8호에서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무효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확정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출원상표가 동일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판단시기는 당해상품의 출원시로 하도록 상표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사정 처분시에 거절이유로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무효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지기 때문에<sup>8)</sup> 출원시에는 상표권이 존재했었다 할지라도 등록사정 처분함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유지하여 왔다.<sup>9)</sup>

그러나 상표심사실무에 있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출원시로 일관되게 적용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보완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다.

#### 나. 法適用關聯 事例研究

##### 〈사례 1〉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정처분시에 인용상표의 무효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거절사정되어야 한다(근거 법조문: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3항).

##### 〈사례 2〉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무효심결로 소멸되었으나 그 무효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정처분시에 인용상표의 무효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출원시로 적용하여 거절사정되어야 한다(근거 법조문: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3항).

##### 〈사례 3〉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는 권리존속하고 있었으나, 거절이유

통지시에는 인용상표가 소멸되었고 다만,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조 1항 제7호 및 동조 8호 규정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적용시점을 법 제7조 3항에서 모두 출원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존속하고 있었을 경우는 마땅히 법 제7조 1항 7호를 적용하여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 다. 大法院 判例의 問題點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당해상표의 심사시점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사관이 인용상표의 무효심판이 계류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출원했을 경우 무효가 확정되기전에 심사를 종료하면 거절이 되고 무효가 확정된 후에 심사를 종료하면 등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될 뿐아니라, 의도적으로 등록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효심판이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출원상표는 무효심판확정시까지 심사를 보류케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심사의 보류를 남용하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심판의 진행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심사가 지연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진행사항의 확인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입력, 미입력 등의 문제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구제수단을 법제

8) 상표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무효심결에 의한 소급적 효력명시를 규정하고 있음.  
9)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출원시가 아닌 사정처분시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93후 2028호 94526 선고, 94후 1121호 94.11.22 선고, 96후 566호 96.10.25 선고 등 다수 있음.

화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 본래의 취지대로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문제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점을 출원시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법 제7조 1항 8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래의 판례를 모두 폐기하고 동조항의 적용시점을 출원시로 함이 마땅하다고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하였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에서는 법 제7조 1항 7호에 대한 적용시점은 사정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법 제7조 1항 7호와 8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는 법 제7조 3항에서 모두 출원시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 제7조 1항 7호와 8호의 적용시점을 한쪽은 등록시점으로 하면서 다른 한쪽은 출원시점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할 것이다.

특히, 법 제7조 1항 7호의 적용에 있어 그 판단시점을 출원시 이에 해당하는 것은 권리주체 변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인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원시로 판단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판결에서는 법 제7조 3항에 대한 해당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등록시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므로써 법적용상 혼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상표의 등록여건을 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 사항의 적용시점을 출원시로 하느냐 등록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순수법 논리로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이며, 수요자보호 및 출원인의 권익보호측면을 비교형량하여 다분히 입법정책상 판단되어지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적용상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 라. 關聯條文의 立法趣旨<sup>12)</sup>

상표법 제7조 1항 8호는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때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선출원 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10) 상표법 제7조 1항 8호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79후 68판결, 85후 76판결, 86후 64판결, 92후 117판결 등에서는 출원시로 판단하였으나, 93후 1834호 95.4.25 판결에서는 종래의 판결을 모두 폐기한다고 판시하면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비록 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소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된 상표는 거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1) 법 제7조 1항 7호의 적용에 있어 그 판단시점을 사정시로 적용하여 판결한 대법원판례는 94.5.26 선고 93후 2028호, 94.11.22 선고 94후 1121호, 96.10.25 선고 96후 566호 판결 등이 있음.

12) 대법원 90.11.27 선고 90후 496판결, 90후 502판결 참조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시점을 출원시로 적용하는 이유도 동일한 취지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마. 改正內容

적용시점의 판단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법 제7조 3항을 상표법 본래의 취지를 받들어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법제7조 1항 7호 및 8호의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출원시로 한다고 구체적인 명문을 적시하여 향후 심사·심판 및 판결에서 일관되게 모두 출원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8. 商標 不當使用者에 대한 出願制限 制裁 規定 改正

가. 改正理由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자신의 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 고의로 상표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및 상표권의 취소가 확정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에 대하여 3년동안 상표등록을 배제토록 하는 제재규정을 설정하므로써 상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하에 마련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자신의 등록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 고의로 갱신등록출원을 기피하여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청구된 그 취소심판은 불사용사실판단없이 심결각하되

어 법제7조 1항 8호 규정에 따라 소멸후 1년 이내에는 원권리자만이 출원등록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악용할 경우 부당사용자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법적용상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였으며,

또한, 문구의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을 달리할 경우 즉 법에서 정하는 출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경과후 출원해야함에도 3년 경과전에 출원하여 등록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면 등록가능한 것처럼 해석하여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취소심판의 사유가 제재규정에 추가되고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취소심판의 사유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제재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나. 改正內容

(1) 해석상 혼동이 있을 우려가 있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한 경우

법 제7조 5항의 본문내용중에서 『청구일 이후에 -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로 개정하여 반드시 취소심판청구일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출원해야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2) 새로운 경우의 신설한 경우

상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본문 내용에 적시하던 것을 각호로 구분하여 열거하면서 제7조 제5항 제1호를 신설하여 『존

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면 원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각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인정하도록 제한하였다.

다. 制裁規定에 該當하는 取消審判請求事由의 新設 및 削除

중전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제73조 제1항 제1호가 금번 법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자동삭제하고 동조 제9호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동 신설하였다.<sup>13)</sup>

뿐만 아니라, 법 제73조 1항 7호는 법 제2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모인출원등록<sup>14)</sup>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으므로 마땅히 제재규정에 대항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제73조 1항 8호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나 업무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 또한 마땅히 제재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적용대상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중전 제7호·제8호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

나, 이 또한 상표부당등록 또는 부당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제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9. 葡萄酒 및 蒸溜酒에 관한 地理的表示保護 強化

가. 地理的表示에 대한 定義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품질이 특정한 생산지의 기후, 풍토, 제조방법 등으로 인해 명성을 얻게 된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국가, 특정지역에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출처표시』의 개념 및 생산된 제품의 특정한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줄 경우의 『원산지표시』의 2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WTO/TRIPs 22조 1항에는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한 지역,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WTO/TRIPs상 地理的表示 保護規定

(1) 지리적표시의 정의 및 보호의 방법에 관한

- 13) ① 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사용권 설정없이 타인에게 6월이상 상표사용을 허락 또는 묵인할 경우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었으나, 상표관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정시 삭제하였음.
- ② 제73조 제1항 제9호는 유사한 상표권의 자유로운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어느 일방이 부정경쟁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시 신설하였음.
- 14) 법 제23조 1항3호에서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될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신청에 의해 거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73조 1항 7호에서는 이익신청없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항(제22조)

- 제2항 a호: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광고, 표시 등)을 금지하는 법적수단의 제공의무규정이다.
- 제2항 b호상의 의무:파리협약 10조의 2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수단의 제공의무규정이다.
- 제3항: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상표의 등록 거부 또는 무효화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다.

(2) 포도주나 증류주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사항(제23조)

- 제1항:포도주 및 주류의 경우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리적명칭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다.
- 제2항:원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거부 또는 무효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 우리나라의 關聯法 規定

우리나라는 WTO/TRIPs의 지리적표시 보호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제하에서 충분히 지리적표시 보호규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규정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대외무역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먼저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표시, 현저한 지리적명칭 및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

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사 잘못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없이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TRIPs의 보호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관련규정: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조제1항제11호, 제23조, 제71조, 제76조).

다음,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생산지 등의 오인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을 금하고 있다(관련규정:제2조제1호 다목, 라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원산지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련규정 :제23조).

그리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으며(관련규정:제44조제1항), 공산품 품질관리법에서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상품에 허위의 품질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규정:제5조).

라. 改正의 必要性

종전 특허청의 입장은 WTO/TRIPs의 지리적표시 보호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현행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표시 등록배제규정(제6조제1항제3호),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등록배제규정(제6조제1항제4호) 및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배제규정(제7조제1항제11호)을 두고 있고 설사 잘못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제척기

간없이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TRIPs의 보호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TRIPs의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규정은 수요자의 혼동유무를 불문하고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sup>15)</sup> 일본 및 미국의 경우도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하여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상표법 개정을 하였으므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한 상표 부등록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상표법상 보호내용을 명확히하여 선진 이해당사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제7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하여 포도주, 증류주의 산지표시보호를 강화하면서 상표심사기준에서 동조항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10. 取消審判請求對象 擴大

### 가. 取消審判制度 趣旨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상표권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상표를 일정기간 불사용하거나<sup>16)</sup> 비록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사용한 자(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재출원의 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성격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 나. 取消審判請求對象 擴大 新設(第73條 ①項 9號)

연합상표제도의 폐지로 상표권의 이전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어 때로는 서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그중 어느 일방이 부정경쟁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관련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심판청구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법 제73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였다.

### 다. 適用될 수 있는 事例研究

어느 일방이 부정경쟁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으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예상하건대 유사한 상표의 이전후 어느일방이 그 상표를 상업적으로 성과있게 사용할 경우 타방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상표에 일어나고 있는 상업적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발특 9805

15) 상표법 제6조 1항 3호 및 4호 규정은 산지표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불허 규정이기 때문에 TRIPs가 요구하는 내용 즉, 포도주·증류주 산지표시만으로 구성된 물론 다른 문자 등과 포도주·증류주 산지표시가 결합된 경우도 포함하여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는 TRIPs의 요청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16) 상표법 제73조 1항 3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어느정도 강제로 권장하면서 불사용저장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제3자에게 상표등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록된 상표가 계속하여 3년이상 불사용될 경우는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